신문공고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7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공고 대행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신문공고 대 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문공고 대행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「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(재일 2002-3)」제3조제1항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에 대한 신문공 고 규정이 각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(재일 2002-3)」제3조제1항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에 대한 신문공 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범위 등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2 조, 제10조, 제11조)
- 각 재판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- 법원행정처장이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행기관 지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)

3.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7)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신문공고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7) 일부개정예규안

신문공고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7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예규는 "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(재민 2004-3)" 제7조제2항(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문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대행기관 지정 등) ① 법원행정처장은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공신력,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(다음부터 "대행기관"이라고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 - 1.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법원
 - 2. 대행기간
 - 3.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
 - 4.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받을 대행수수료.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 -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- ③ 지방법원 및 지원(다음부터 "법원"이라고 한다)의 재판부는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 공고 업무를 처리한다.
-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.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언론재단"를 "대행기관"으로, "각 신문사의 제안단가와 정부광고단가에 관한 보고서"를 "각 신문사의 제안단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한다. 제7조 중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지정의 취소·변경)"을 "(신문공고 계획의 취소·변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정신문에 위와"를 "제1항과"로, "지정신문"을 "공고를 게재할신문"으로, "지정내용의 변경 등"을 "신문공고 계획의 변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지정신문 또는 지정내용"을 "신문공고 계획"으로 한다.

① 신문의 폐간·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,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, 법원행정처장은 제

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도 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언론재단이 신문공고 양식(경매 매각기일 공고의 경우에는 [전산양식 A3356] 매각기일의 공고 양식)에 맞추어 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제작한 후"를 "대행기관이 신문공고 양식(전산양식 A3356)에 맞추어 제작된 원고에 대하여"로,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한다.

①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(e-mail),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대행기관에 송부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) 대행기관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하고 공고료의 지급을 청구하면, 해당 법원 은 공고료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료를 지급한다.

제13조 중 "언론재단"을 "대행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2조(적용범위) 이 예규는 "민사소송규칙에 규 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02-3)"제3조 제1한에 따른 신문공고와 "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(재민 2004-3)"제7조 제2항(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문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대상법원 및 대행기관) 지방 법원 및 지원(다음부터 "법원" 이라고 한다)의 재판부는 제2조에 따른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 언론진흥재단(다음부터 "언론재 단"이라고 한다)을 통하여 신문 공고 업무를 처리한다. 개 정 안

제2조(적용범위) 이 예규는 "부동 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(재민 2004-3)" 제7조제2항(제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에 따른 신문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대행기관 지정 등) ① 법원행 정처장은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공신력, 대행수수료의 적정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 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 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(다 음부터 "대행기관"이라고 한다) 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

무를 처리할 법원

- 2. 대행기간
- 3.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
- 4.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 받을 대행수수료. 이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-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③ 지방법원 및 지원(다음부터 "법 원"이라고 한다)의 재판부는 신문 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 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.
-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
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 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.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(의견조회) ① 법원행정처(주 제4조(의견조회) ① ------무: 사법지원실, 다음부터 같다)는 매년 10월 초에 언론재단으로부터

----- 대행기관-----

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제안 서가 제출되면, 이를 각 법원에 송 부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각 법원에 송부하는 제안서에는, 언론재단으로부터 각 법원의 해당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시기, 자산규모, 주된 보급지역, 발행부수, 연간 광고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단가와 정부광고단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각 법원은 지체없이 <u>언론재단</u>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 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승인 등) 법원행정처장은 각 전 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언론재단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·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4. (생 략)

 ,
②
<u>대행기관</u>
<u>각 신문사의 제안단가</u>
③ <u>대행기관</u>
세6조(승인 등)
<u>대행기관</u>
·.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계획안의 송부) 언론재단이 법 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 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해 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신문공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, 법 원행정처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 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정의 취소·변경) ① 지정 신문의 폐간·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.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지정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 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지정내용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, 법원행정처는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언론재단을 통하여 계 획안의 지정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공고료 등 지정내용 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각 법원은 지정 신문에 위와 같 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 정처에 지정 신문의 변경 또는 취 소, 공고료 등 지정내용의 변경 등 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계획안의	송무)	대행기관-	

제8조(신문공고 계획의 취소 · 변경) ① 신문의 폐간·휴간 또는 공고 의 해태,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 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 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,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서 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 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----- 제1항과-------- 공고를 게재할 신문---------- 신문공고 계획의 변경-
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문 또는 | ③ ------ 신문공고 계획 ----

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. 제10조(공고절차 등) ① 법원사무관 등은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공고에 대하여는 게재일 7일 전까지, 경매 매각기일 공고에 대하여는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(e-mail),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언론재단에 송부한다.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공고사항의 내용을 송부할 때에는 공고의뢰서를 첨부한다.

② 언론재단이 신문공고 양식(경매 매각기일 공고의 경우에는 [전산양식 A3356] 매각기일의 공고양식)에 맞추어 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제작한 후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,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언론재단에 확인하여 준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인터넷 공시) ①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이

제10조(공고절차 등) ① 법원사무관 등은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공고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에 대하여는 게재일 7일 전까지, 경매 매각기일 공고에 대하여는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 명을 전자우편(e-mail), 팩시밀리 가게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 양의 내용을 전자우편(e-mail), 팩 부한다.

2	<u>대 형</u>	기관이	신	문공그	고 (양식(<u>(전</u>
<u>산</u>	양식	A3356)	에	맞추여	거	제작	·된
<u>원</u>	고에	대하여					
			-	대행/	기관		
3	(현형	냉과 같음	<u>-</u>)				

〈삭 제〉

신문공고 후 일정기간 동안 무료 로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는 신문공고일부터 6개월간 유지되 도록 한다.
- 제13조(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 제13 력) 법원행정처는 언론재단으로부 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 원별 공고사항, 공고건수, 공고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, 이 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.

제12조(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) 대 행기관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 원에 교부하고 공고료의 지급을 청구하면, 해당 법원은 공고료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 하는 방법으로 공고료를 지급한 다.

제13조(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	노
력) <u>대행기관</u>	
 ,	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	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567